

#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1)

연구원 류 정 우\*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잉크방울이 떨어져 확산되어 가는 것처럼, 인터넷은 전세계를 급속하게 물들여가며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의 개념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이 거들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의 파급효과는 세계사회 이곳저곳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돌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몰고 온 세계사회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통상문제의 본질과 구조를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 목 차

1회(이번호)	
I. 도 입	
II. 전자상거래와 통상문제	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과정
1. 통상문제의 본질	나. WTO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각국별 입장
2. 통상문제의 종류	다. 각 이사회별 전자상거래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3.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통상문제	
4.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2회	
III. WTO 다자간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와 GATT1994	2. 전자상거래와 GATS
3회	
3. 전자상거래와 TRIPS	IV. 종합결론 및 전망

연락처: \* 통신·방송정책연구소 (02)570-4435, jungwoo@sunnet.kisdi.re.kr

홈페이지: <http://sunnet.kisdi.re.kr/~jungwoo>

## I. 도입

전자상거래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구현방식 만큼이나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OECD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미국과 EU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별도로 집계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은 현재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발전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여념이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들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경제적 기회의 확대에 관해 많은 논란을 펼쳐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자상거래를 화두로 하는 논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패턴 변화와 그 전망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뿐 ‘전자상거래 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 제시는 매우 취약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전자상거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논자마다 제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 다양한 정보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이 인간생활의 양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상거래’라는 단일주제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를 논할 경우에는 주제별로 가능한 한 논의의 범위를 특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도 이러한 시각에서 통상분야에 집중하여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1)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문헌에 나타나 있는 정의로는 ‘EDI 등의 전자적인 수단을 토대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거래’, ‘이른바 두 개 이상의 기업간의 사업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련의 통합적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컴퓨터 통신망을 바탕으로 하여 팩스,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광고, 주문을 포함하는 계약체결, 대금지급, 상품의 인도나 서비스의 공급 등 제반 경제활동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전자데이터의 전달방식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래’, ‘거래행위의 준비단계, 성사단계, 그리고 이행단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등이 있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2조 5호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동법 2조 1호).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p.29에서 재인용.

## II. 전자상거래와 통상문제

### 1. 통상문제의 본질

통상문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이나 무역분쟁을 연상하기 쉽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통상문제 대부분이 이 두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가지 분야가 통상문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밖에도 통상문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결정의 문제, 관세평가의 문제, 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세계표준 제정 문제, 개도국 지원 문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해당 통상규범이 적용되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은 특정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생성·발전해 나간다. 국제무역분야에 적용되는 규범인 통상규범 역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통상문제는 국가간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통상규범체제가 개인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국제규범의 간접주체로서 국가간 합의에 의한 조약 또는 국가가 가입한 다자기구의 결정 등이 국내법으로 전환된 후에야 비로소 규범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 활동의 패턴이 기존 규범의 틀로 수용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내 규범은 물론 전세계적인 규범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미국의 국내통신시장 수요 포화상태를 해소하고자 국제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척 시도가 전세계적인 통신시장의 개방협상을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상문제의 본질은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변화와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규범체계간의 갈등에 있다.

### 2. 통상문제의 종류

통상문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적 측면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규범’이 가지고 있는 생성, 적용·집행 및 변화·발전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상에 관련된 국제규범에도 이러한 구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로 통상규범의 생성에 관한 측면이다. 범규범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성

립된다. 즉 일정한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중 법규범은 그 사회 내부 시스템의 물리력에 의해 강제적인 집행이 인정되는 가장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통상규범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통상과 관련된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관세장벽, 서비스교역의 증대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요구 등이 반영된 WTO 창설 및 부속협정의 생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통상규범의 적용·집행에 관한 측면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규범은 여타 규범과 달리 강제력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다.<sup>2)</sup> 이러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규범의 적용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들 수 있다. GATT체제하에서는 대부분의 통상분쟁이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해소되었다. 물론 GATT 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마련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성격과 운영은 매우 정치적인 특성을 띄고 있었다. WTO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법적 제도의 형식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 통상규범의 변화·발전에 관한 측면이다. 이 부분은 사실 첫 번째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통상규범의 변화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경우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의 생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발전이란 기존의 체제는 유지해 가면서 적용범위 또는 적용지역이 확대되거나 또는 기존 협정의 내용이 구체화·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2월 타결된 기본통신서비스협정을 들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타결되지 못한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이었던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은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GATS의 적용범위 확대를 가져온 통상이슈였다.

### 3.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통상문제

앞서 통상문제는 변화하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상규범체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통상문제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2) 물론 집행력의 수준차이는 존재한다. 아직 국제사회의 통합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야별로 집행력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협력기구인 유럽연합에서는 매우 강력한 집행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 회원국 정부와는 별개로 유럽연합 차원의 법집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행력의 수준이 낮다는 이유가 법규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상규범의 생성

첫번째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국제규범 생성에 관한 통상문제이다. 국제규범의 생성은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관할권의 창설로 이해할 수 있다. 관할권이란 정당한 정치권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경제적 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에 따라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권력의 집행을 말한다. 국제기구차원에서의 관할권이란 그 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의미한다. 한가지 예로, WTO는 부속협정의 시행, 회원국간 무역협상의 장(forum)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제경제 분야 중 통상부문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고 있다.<sup>3)</sup>

이 주제에 대한 검토의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관할권의 창설을 요구할 정도로 시장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사실판단의 평가문제이다. 즉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제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제사회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통상법규범이 생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제활동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다양하게 발전되었을 뿐 통상환경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인간생활의 본질 및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조의 구조적인 변화가 세계시장환경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자의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관할권의 창설이 필요할 정도로 세계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OECD에서 개최한 일련의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대부분의 지침이 근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부분적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관할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각종 NGO(비정부간기구)의 국제법주체성 인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나.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상규범의 적용·집행

통상규범의 적용·집행 부문은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3) WTO 창설협정 II, III조.

4) 경제분야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범죄 분야 등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할권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수 있다. 통상규범의 적용과 집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통상분쟁 포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발효되어 있는 WTO협정들을 유권 해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법적 해결 포함)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GATS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WTO협정들은 기술중립성을 주요 원칙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sup>5)</sup> 즉 구체협정의 권리와 의무는 기술적 발전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협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개별협정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동종성'(likeness)에 관한 문제이다. 동종성은 GATT와 GATS 모두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회원국 경제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이다. 즉 GATT는 동종상품(like product), GATS는 동종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의무를 부담한다.

전자상거래는 이 동종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우선 GATT와 GATS의 적용범위 결정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 재화를 국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GATT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팜플렛이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해 행해진 구매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일정 기준 이상의 통관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sup>6)</sup>

그러나 구매의 대상이 파일화된 책이나 음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위 디지털재화인 경우에는 해당협정의 선택 및 적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CD-ROM에 저장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로와 인터넷을 통해 반입

5) GATS에 기술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ATS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적 방식을 차별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중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WTO Doc. S/L/74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19 July 1999, para. 4). 보다 적극적인 기술중립성 관련 규정은 정부구매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협정 24 조에서는 "협정이 기술적 진보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정수정협상을 포함하여,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정보기술 사용의 발전에 관하여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 발전 문제에 대해 규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인터넷을 통한 재화 구매의 경우 선호되는 국제 택배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에 재화가 반입될 경우에는 먼저 통관우체국에 집하된 후 내용물에 대한 반입 및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은 후 배달되는 절차를 거친다(관세법 150조 이하).

되는 경로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후자의 방법은 모든 구매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게 됨에 따라 관할당국의 반입거부 결정이나 과세권 집행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입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제품과 CD-ROM을 통한 구매된 제품 사이에 동종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GATS에 가면 보다 심각해진다. GATS는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4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각각을 구체적약속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한 유형에 속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공급방식에 따라 네가지 형태의 서비스로 세분된다. 전자상거래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이 공급방식 분야이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교육서비스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통신망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온라인 교육시장은 전세계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강의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직접 수강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국경간공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외소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실제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요건을 부가하게 될 경우 이러한 구별은 더욱 모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종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쟁과정에서 패널 및 상소기관을 통해 확립된 'Case-by-Case Rule'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종성'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종성 문제는 매번 분쟁해결과정에서 해당국의 특수한 시장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지도 및 구체적 여건들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판단해 왔다.<sup>7)</sup>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일반화되었다. 인터넷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별다른 장치 없이도 유선전화 품질 수준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이러한 인터넷 기반기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시장 잠식 문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sup>8)</sup>

7) 소주와 위스키의 동종성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 주세분쟁에서도, 한국 소주시장 내 소비자들의 음주 습성과 음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종성이 인정되었다.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R, WT/DS84/R(1998. 9. 17)]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주세사건에 앞서 일본 주세분쟁에서도 일본산 소주와 위스키가 동종상품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환경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널도 유사한 추론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에서 시사점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8) 국내업체인 새롬기술이 개발한 computer-phone형 인터넷폰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미국에서 불과 수개월만에 가입자 수가 1,500,000명을 돌파하였고 국내에서도 몇일만에 수십만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우회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이 부문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문제는 대부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GATT에 비해 효율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최소한 18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분쟁해결에 소요되며 완전한 이행까지는 심한 경우 30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과 수개월을 단위로 변화·발전해 가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속도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9)</sup>

#### 다. 전자상거래와 통상규범의 변화·발전

통상규범의 변화·발전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통상규범의 틀을 새로 짜거나 또는 독자적인 관할권의 인정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 체제로는 수용하기 곤란하여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된다. 뉴라운드 과정을 통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이나 서비스 분류체계의 수정 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GATT와 GATS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수히 개발되고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종서비스의 WTO법상 지위는 매우 모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는 아무런 제재없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제3차 각료회의 선언문 기초 과정에서 미국이 최종단계에서 삽입을 주장한 GATS 통신부속서의 기술중립성 명기 문제<sup>10)</sup> 등도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차별적 정부 조치에 대한 예방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그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의 지위 문제로 이 분야에 속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9) 이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제도는 WTO분쟁해결 양해 4:(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해결 절차이다. 동조에 따르면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일반적인 경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분쟁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 모두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미국은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협의 최종단계에서 서비스공급자가 인터넷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공중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안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회원국들의 시기상조론 또는 반대의견과 각료선언문 채택실패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 논의가 연기되었다.

11)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Ⅲ-2 전자상거래와 GATS)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4.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 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과정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3월 WTO 사무국에서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WTO체제와 전자상거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회원국간 찬반토론을 거쳐 제3차 각료회의때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1998년 5월 18일부터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sup>12)</sup> 채택으로 가시화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를 망라하여 검토하기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개발, 3차 각료회의의 때 해당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WTO의 전자상거래 Work Program<sup>13)</su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WTO 전자상거래 Work Program 내용

해당기관	주요 검토 대상규정
GATS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S I : 범위 및 공급양식</li> <li>· GATS II : 최혜국대우</li> <li>· GATS III : 투명성</li> <li>· GATS IV :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li> <li>· GATS VI, VII : 국내규제, 표준, 인정</li> <li>· GATS VIII, IX : 경쟁정책</li> <li>· GATS XIV : 프라이버시, 공동도덕 보호, 사기 방지</li> <li>· GATS XVI :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시장접근 약속</li> <li>· GATS XVII : 내국민 대우</li> <li>· 통신부속서 : PSTN에 대한 접근 및 PTT의 이용 확보</li> <li>· 관세문제</li> <li>· 서비스의 유형 분류 문제</li> </ul>
GATT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상품에 관한 시장접근 문제</li> <li>· 관세평가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li> <li>·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li> <li>· GATT1994II조상의 관세 및 기타과세에 관련된 문제</li> <li>·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표준 문제</li> <li>· 원산지규정 원칙에 관한 문제</li> <li>· 상품의 유형 분류 문제</li> </ul>

12) WT/MIN(98)/DEC/2, 1998. 5. 25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13) WT/L/274, 1998. 9. 30. Work Program of Electronic Commerce

해당기관	주요 검토 대상규정
TRIPS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와 강화에 관한 문제</li> <li>· 상표권의 보호와 강화에 관한 문제</li> <li>· 신기술 관련 문제 및 기술에 대한 접근확보 문제</li> </ul>
무역개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에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의 기업활동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li> <li>·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수단 및 장애사유 : 기술이전, 자연인의 이동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 확대의 역할</li> <li>·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li> <li>· 전자상거래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유통을 위한 전통적인 수단에 미치는 영향</li> <li>·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li> </ul>

#### 나. WTO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각국별 입장

미국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무관세화를 비롯하여 급진적인 시장 환경의 조성을 주장하였다. 여타 국가들도 대부분 전자상거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업반 또는 위원회의 설치는 지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기술 이전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장하였다. 전자상거래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국 가	주 요 입 장
미 국	· On-line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를 영구화할 것을 주장하고, 전자상거래가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포함된다는 원칙 지지 (캐나다도 무관세 관행 영구화 지지)
유럽 연합	·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원칙 리스트를 작성· 회람하였는바, 현행 관세부과 유예는 유지하지만 영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달리 회원국이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일 본	· 전자적으로 전달된 digital content를 2종류(pre-packaged information, customized information)로 나누고 전자는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수량제한금지 등의 GATT 규범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 - 전자적 전달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관행은 계속 유지

국 가	주 요 입 장
싱 가 폴 인 도 네 시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채택을 위한 작업반 설치에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해에 정의 및 분류 등을 포함한 법적 구조,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장벽 요소 및 자유화방식 등을 포함한 시장접근 문제, 개도국을 위한 기술원조 및 능력개발 문제 등을 포함</li> <li>-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 관세유예조치 연장 지지</li> </ul> </li> </ul>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제안에 대해 기존 산하기구에서의 검토도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별도 작업반 설치에 반대</li> </ul>
기 타 개 도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 제도적 능력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주장</li> </ul>

\* 참고: 통상법제브리핑 1999년 각호,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다. 각 이사회별 전자상거래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 1) 상품무역이사회<sup>14)</sup>

상품이사회에서는 주로 시장접근, 관세평가, 수입허가, 관세와 부과금, 원산지규정, 분류 등 부문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측면을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전자전송은 그 내용물이 상품인 경우에만 1994년 GATT와 그 외 WTO협정 부속서 1A 분야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전자전송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견을 다수국가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ITA, 무역축진 등과 전자상거래와 관련성 문제, 상품분류체제인 HS 적용 가능여부, 원산지 규정문제, 작업프로그램과 관련한 관세평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2) 서비스무역이사회<sup>15)</sup>

서비스이사회에서는 GATS협정의 제반규정 - 즉, 대상범위, 최혜국대우, 투명성, 개도국 참여, 국내규제, 경쟁관련 조항, 시장접근, 내국인대우, 구체적 약속, 관세, 분류 등 -에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electronic delivery)이 GATS협정 대상이라는 점, 모든 서비스 공급방식(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노동이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기술적 중립성의 적용 등에 대해 국

14) G/C/W/158, 1999. 7. 26

15) SIC/W/115/Rev.1, 1999. 7. 20

기간 일반견해를 같이 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위 문제가 복잡하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의 기술적 중립성이란, 특정 서비스의 교역이 그 서비스의 전달방식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만약 한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를 양허하였다면, 기존에 FAX나 전화로 전달되던 것이 당연히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로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급방식 분류상의 모호성, 최혜국대우 및 내국인대우 원칙의 적용상의 동종성(likeness)의 정의 문제, 통신부속서상의 공중통신운송망과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망과 서비스의 접근가능 여부 문제, 과세부과문제 등 다수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3) TRIPS이사회<sup>16)</sup>

TRIPS이사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상표권 보호 및 기타 신기술 발전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집행관할권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가 전자상거래의 지재권 분야 적용에서의 기술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재권소유자의 자율적 권리확보와 국제차원에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간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작업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저작권 관련, 회원국은 전자상거래가 가져온 새로운 창조, 생산, 분배, 사용방법이 가져올 기존 저작권 정의 및 권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인터넷의 발전을 반영하여 96. 12. WIPO에서 채택한 신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 및 기타 WIPO에서의 논의동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상표권 분야에서는 상표권의 전통적인 영토주의와 충돌, 유명상표 보호문제, 상표권과 인터넷 도메인네임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으며, WIPO에서 진행 중인 관련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

## 참 고 문 헌

- [1] WTO창설협정 및 부속서
- [2] WTO 문서, WT/DS75R, WT/DS84/R(1998. 9. 17),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 [3] \_\_\_\_\_, WT/MIN(98)/DEC/2(1998. 5. 25)

16) Job No. 4289, 1999. 7. 20

- [4] WTO 문서, S/C/W/115/Rev. 1 (1999. 7. 20),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5] \_\_\_\_\_, S/C/M/37 (1999. 6. 20),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2 and 24 June 1999
- [6] \_\_\_\_\_, G/C/W/128 (1998, 11. 5),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 [7] \_\_\_\_\_, Job No. 4289 (1999. 7. 20), Draft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8] Lee Tuthill, "E-Commerce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an Ideal Match?", *World Trade Brief*, Agenda Publishing Co., 1999. 12
- [9] William J. Drake, "Global Electronic Commerce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the "Millennium Rountg" and Beyond", *Paper for World Service Congress 2000*, 1999. 11
- [10]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통상법제브리핑 1999년 각호
- [11] 박노형, GATT체제하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 1994년
- [12] \_\_\_\_\_,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6년
- [13]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년